



약식 시장접근 중지 공지에 대한 2 차 수정 공지

CME-18-0856
발효일: 2018년 7월 6일

문서번호: [CME-18-0856](#)

회원여부/비회원: 하나금융투자

CME 규정: **413.약식 접근 중지 조치 (일부)**

413.A. 접근 중지 권한

최고규제책임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거래소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선의로 판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어떤 당사자의 CME 그룹의 일부 또는 모든 시장에 대한 접근 중지, 2) 어떤 당사자의 Globex 플랫폼에 접근 중지, 3) CME 그룹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여타 전자거래 또는 청산 플랫폼에 대한 어떤 당사자의 접근 중지, 또는 4) CME 그룹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트레이딩플로어에서 회원의 즉시 퇴장.

결론: 2018년 5월 21일, CME 그룹의 시장규제부 (이하 “시장규제부”)는 최고규제책임자를 통해 CME Globex 전자거래플랫폼 (이하 “Globex”), CME 그룹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여타 전자거래 혹은 청산플랫폼, CME 그룹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트레이딩플로어 등을 포함하여 모든 CME Group 시장에 대한 하나금융투자 (이하 “하나”)의 직접 및 간접적인 접근을 즉각적으로 중단하였다. 이러한 시장접근 중지 조치로 하나 및 하나의 계좌를 통한 그 누구도 모든 CME Group 거래소 상품에 대해 모든 개인, 법인, 또는 계좌를 위한 매매, 주문 입력 및 거래 관리 및 지시가 금지되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하나측 청산회사에 보유된 미결제약정은 하나 또는 하나의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청산회사에 의한 청산이 허용되었다. 2018년 6월 13일, 최고규제책임자는 시장접근 중지 조치를 수정하여 하나가 자기매매계정을 위하여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2018년 6월 13일 이후로 하나는 청산회사에게 개별 고객계좌의 보유약정(포지션)을 총합하여 보고하고 (이러한 계좌가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되는 경우), 계좌 소유자 및 계좌의 거래권한자를 식별하고, 시장규제부의 요청에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거래소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음을 시장규제부에 입증하였다.

시장접근 중지 조치: 이에 최고규제책임자는 본 조치를 수정하여 시장접근 중지 조치를 2018년 7월 6일 거래일에 종결한다.

발효일: 2018년 7월 6일